

## 우체국 재형저축 특약

###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특약은 고객과 우정사업본부 (이하 '우체국' 이라고 한다) 와의 「우체국 재형저축」 (이하 '이 예금' 이라고 한다) 거래에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령, 농어촌특별세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 약관을 적용한다.

###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적립식예금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 500만원 이하인 고객

#### 제4조 【저축방법 및 가입한도】

- ① 이 예금은 분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만원 이상으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단, 가입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한도이다.
- ② 우체국은 세금우대저축한도집중기관을 통하여 고객의 저축 가입 가능 한도를 조회 · 확인 할 수 있다.

#### 제5조 【계약기간】

- 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한다.
- ②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 【세율의 적용】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1. 이 약관 제3조 각 호의 가입자격, 제4조 제1항의 분기 가입한도, 제5조 제1항의 계약기간, 제8조 제1항의 가입자격 확인서류 제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2.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 제7조 【중도해지와 세율의 적용】

① 이 예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

1.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고객

나.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고객

다. 제3조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에 근무하고 있으며 예금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이하로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고객(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2. 제3조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제1호에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고 특별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 천재 · 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제8조 【가입자격의 검증】

- ① 이 예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이 제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우체국은 고객이 우체국에 제출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및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제3조 및 제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가입 처리한다.

- ④ 제3항의 우체국의 가입자격 확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고객이 제3조 및 제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고객이 가입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우체국에 통지한다.
- ⑤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검증절차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우체국에 그 사실이 통지된 경우 그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이 예금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추가 입금과 이자의 제공이 중단된다.
- ⑥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이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우체국에 그 사실이 통지된 날의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9조 【가입자격 부적격 판정 통보 및 의견제시】

- ① 우체국은 국세청으로부터 고객이 이 예금에 대한 가입자격이 부적격 하다고 통보를 받을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객에게 우편(등기취급)으로 알린다.
- ② 고객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체국이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위 2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사망, 해외장기출장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 ④ 국세청은 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의견을 제시 받은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체국에 그 수용 여부를 통보하며, 고객의 이의가 수용되어 가입 자격이 적격으로 다시 판정되고 국세청이 이를 우체국에 통보한 경우 우체국은 제8조 제5항에 의거하여 중단된 입금이 다시 가능하도록 즉시 조치한다.

## 제10조 【제한사항】

- ① 이 예금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이 예금은 계좌분할 및 일부 해지 할 수 없다.
- ③ 이 예금은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수 없다.
- ④ 이 약관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농어촌특별세법 등 관련 법의 변경 시 해당 법령에 따른다. 다만 은행은 그 변경 사항을 즉시 약관에 반영하고 이를 예금거래기본약관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게시 또는 공고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린다.

\*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 약관변경

- ① 우체국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 달간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예금주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이자율의 적용】

- ① 이 예금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되, 가입일로부터 최초 3년 간 확정금리(기본이율 및 우대이율)를 적용하고, 3년 이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는 변동금리(기본이율)를 적용하여 해지 시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지급한다.
-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제12조 【중도해지이율】

- ① 이 예금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신규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 당시 우체국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예금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적용 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에 중도해지 할 경우 :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2.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후 중도해지 할 경우 : 이 예금의 기본이율 적용
- ② 이 예금을 제7조 제2항에 의해 특별해지를 하는 경우 신규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 예금의 기본이율을 적용한다.

### 제13조 【만기후이율】

이 예금을 만기일 이후에 지급청구 할 때에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만기일 당시 이 예금의 기간별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한다.

### 제14조 【우대이율】

이 예금은 신규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최초 가입일로부터 3년간 최고 연 0.3%p 까지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1. 우체국 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sup>주1)</sup>이 있는 경우 : 연 0.1%p
2.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1%p
3. 우체국 스마트폰뱅킹 거래 실적<sup>주2)</sup>이 있는 경우 : 연 0.1%p
4. 자동이체 약정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 연 0.1%p

주1) 급여이체는 '기관으로부터의 소속직원 급여이체' 또는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 급여성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주2) 우체국 스마트폰뱅킹을 활용하여 수시입출식 통장에 입출금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하여 우체국 예금상품에 가입한 경우



## 부 칙

- ① 이 특약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다목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015년 8월 6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